



정책사항

주택업계 당면현안

협회는 지난 7월 22일 르네상스서울호텔 4층 토파즈룸에서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 조정 주택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택업계 당면현안을 건의하였음

○ 건의내용은

1.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추진 중단

- 시장경제원리에 반하여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원가공개 반대
- 원가공개의 범위(주요항목 공개)에 관계없이 원가공개에 따른 부작용은 동일하므로, 원가공개 추진 중단 바람직
- 국내 부동산 및 주택시장의 문제해결 방법도 글로벌 스탠다드와 시장경제원칙하에서 찾아야 할 것임

2. 지구단위계획 제안시 토지소유자 동의율 완화

- 주민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제안을 위한 해당토지소유자 동의율 완화(토지소유자 80% 이상→2/3 이상)

3.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주택수요 촉진

- 투기과열지제도(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 주택거래신고지역) 탄력적 운영
- 지정요건 소멸시 지방도시부터 단계적 해제 조치
- 지정단위구역의 실효성 확보 : 시 · 군 · 구 단위→동 또는 광역아파트단지 단위
- ※ 주택거래 원활화 · 실수요자 자금부담 완화 및 지방경기 회생을 위해 규제완화 시급

4.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완화 및 도시기반시설부담제 폐지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은 개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준으로 상향조정(150% 이하→250% 이하)
- 공동주택 건설시 기반시설부담 의무제 폐지
 - 다만, 폐지가 불가할 경우 최소한 아래와 같이 개선
 - 당해지역을 제외한 인근지역의 기반시설 부담 의무 폐지
 -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당해 지자체가 건설지원도록 개선

5.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확대 및 토지수용 요건완화

- 건산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등록자 및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자로서 시공능력을 갖춘 자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인정
- 토지수용요건 완화
 -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매입 및 토지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 →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매입

6. 공공택지내 민간아파트 원가 주요항목 공개방침 철회

- 공공택지내 25.7평이하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주요항목 공개방침 철회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회계처리제도 개선

협회는 지난 7월 2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에서 임대주택 공급 추진을 위하여 중형 장기임대주택에도 세제 및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건설사업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등이 부채로 계상되어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할수록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어려움 때문에 민간건설업체가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회계처리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공공주택과에 건의(7.5)하였음.

○ 건의내용

- 임대주택건설사업에 관한 독립된 기업회계기준 또는 해석 신설 및 새로운 기준 또는 개정 해석이 마련되기 까지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부채과다 표시로 인한 제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조치가 시급 하며,
 - 독립된 기준이 마련되기까지 국민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은 그 경제적 실질이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차입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하여 재무제표상 주석으로 표시하여 대외 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 주석예시 : 「임대주택공급회사의 결산서상의 고정부채 중 국민주택기금은 국가의 주택정책상 건설 임대주택 가구당 일정액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한 합계금의 표시일 뿐이며, 회사의 일반운영자금 부채와는 구별되고 임대보증금은 장래에 분양전환시 분양대금의 일부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협회는 지난 7월 27일(수) 건설교통부공고 제2004-202호(2004.7.14)로 입법예고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협회의 검토의견을 건교부 주택국에 건의하였음.

○ 건의내용

1.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 조정

- 종전 시공자의 조력화에 추진되어온 재건축사업의 추진체계를 조합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전문성 및 재정적 능력 등을 고려함이 없이 시공자를 사업시행인가후에 선정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함.
-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소요되는 사업경비(조합운영비, 설계비, 행정용역비 등으로 약 10~20억원 소요)의 조달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무산이 예상됨
 - 조합원들로부터 사업경비를 납부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 또한 담보를 제공해야함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으며
 - 대다수의 정비업체가 자본금 규모가 적어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실정임
- 시공과 설계는 통일성있게 결정되어야 하지만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설계가 선행되고 시공자는 그 후에 선정되므로 시공과 설계가 분리되는 모순이 있고, 시공자 선정후 설계를 변경하여야 하는 부작용이 초래되므로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후로 앞당길 필요가 있음

2. 임대주택 의무건설 대상 완화

- 대상지역 조정

- 재건축 개발이익은 강남지역 등 일부지역에서만 발생하고 있음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전체를 적용지역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적용대상지역을 최소화(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할 필요가 있음

- 적용대상 축소

- 임대주택 의무건설 재건축대상 단지가 소규모(300 세대이하)이거나 1:1 재건축사업단지, 고도제한 등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이 어려운 지역 등 증가되는 용적률(50%)이 적은 단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 적용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적어 유지 · 관리상 어려움이 많음

3. 임대주택 의무건설 적용제외대상 확대

(제1안) :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는 제외하는 방안

-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의 경우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에 의하여 1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로 매각할 경우 조합원의 추가 부담이 크고 이의 일부가 일반분양자에게 전가 될 경우 주택가격 안정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제2안)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단지는 제외하는 방안

-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정비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4. 추가 개정의견

가. 도정법 시행이전 선정된 시공자의 법적지위 인정

- 도정법 시행이전(‘03.7.1)에 시공자로 선정되었으나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고하지 못한 재건축 사업장중 토지 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공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법적 지위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부칙 보완 필요



주택사업 추진관련 애로사항 제출

협회는 지난 7월 23일(금) 주택사업 추진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건교부 주거환경과에 제출하였음

○ 제출내용

1. 문화재 지표조사의 기간 및 기준 명확화

- 지표조사기관의 객관적 조사기준(기간포함) 마련 및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 통보기간 명시
- 재건축 사업의 경우 기존의 지표조사 결과를 인용토록 조치

2. 환지방식 시행시 사업시행 절차간소화

〈시행자 지정 관련〉

- 토지소유자도 법률상 제시된 요건(도시개발구역안의 국 · 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만 갖추면 조합과 평등하게 사업시행자로 지정
- 향후 사업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절차만 거치면 사업자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의 명확화

〈사업계획승인 의제처리 관련〉

- 환지방식의 경우 조합구성원인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6호에 의한 시행자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때 주택법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

3.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학교용지 확보부담 완화

- 소규모 개발사업(300세대~2천세대)의 경우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분담금 중 선택적 으로 부담토록 개선
- 학교용지 개발·확보 자연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제 폐지

4.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감정평가비용 부담제도 개선

- 감정평가 비용을 분양전환가격에 별도 가산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임차인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토록 함
- 분양전환에 대하여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할 경우 감정평가 없이 분양전환 할 수 있도록 함

5. 임대주택건설사업자의 회계제도 개선

- 대한건설협회의 재무관리상태 진단요령(1994년도)에서 건설업체 부채비율 산정시 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하여 산정한 예를 준용하여 재무제표 작성시 임대주택건설과 관련한 임대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을 차감 표시하거나,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임대보증금 및 국민주택기금은 그 경제적 실질이 임대주택건설 사업자의 차입금(부채)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건의함
 - 주석으로 「임대주택 공급회사의 대차대조표 상의 고정부채 중 국민주택기금은 국가의 주택정책상 건설임대 주택 가구당 일정액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한 합계금의 표시일 뿐이며,
 - 회사의 일반 운영자금 부채와는 구별되고, 임대보증금은 장래에 분양전환시 분양대금의 일부이다」라고 표시토록하여 대외 신용평가 또는 금융거래 등에서 국가의 정책사업인 임대주택건설로 인한 국민주택기금과 임대 보증금으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 현재의 회계처리제도 하에서는 다른 부채가 전혀 없더라도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재무제표 상 국민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이 누적되어 표시됨으로써, 그 경제적 실질과 다르게 과도한 부채규모와 기업 외형에 비해 부진한 영업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및 임대보증금이 부채로 계상 또는 표시되지 않도록 하거나 부채로 계상되더라도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리스회계처리를 준용하는 「해석 56-90」의 방법이 아닌 별도의 임대주택회계기준서의 제정이 필요함

6. 주택건설 사업 추진 관련 지연사례 개선안

- 주거 및 상가 복합동의 경우 당초대로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하나의 동으로 산정하여 2/3 이상 동의 시 재건축 결의로 간주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출

협회는 지난 7월 29일(목)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리협회의 검토 의견을 건교부 주거환경과에 제출하였음

<의원입법안>

-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공동주택 내부의 공기질이 쾌적하게 유지되도록 기준을 맞게 시공
-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 ◆ 공동주택을 실내 공기질 기준에 맞게 시공하지 않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협회 검토안 : 삭제
- 사유
 - 친환경건축자재의 개발 부족과 실내공기질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시점에서 공동주택의 공기질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것은 불합리함
 - 정부에서는 기준을 설정하고 처벌규정을 법제화하기에 앞서 친환경건축자재를 개발·공급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우선 되어야 함
 -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장기간의 연구개발 없이 무리하게 기준을 설정할 경우 분양가에 미치는 부담이 매우 크고, 입주자의 피해보상요구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친환경 자재 개발 및 이를 통한 실내공기질에 대한 실측과 검증이 이루어진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공기질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기준설정이 필요하다면 유지기준이 아닌 권고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 공동주택에도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을 제한함
- 협회 검토안 : 삭제
- 사유
 - 공동주택건설관련 기준 등의 혼재로 기준적용에 혼란을 가져오는 사례가 있으므로 공동주택에 사용하는 자재 등 주택건설과 관련한 기준은 주택건설기준에 명시하여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협회는 지난 7월 22일(목) 재정경제부공고제2004-83호('04.7.5)로 입법예고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우리협회 겸토의견을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 제출하였음.

〈개정안〉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신도시, 신행정수도 후보지, 기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경우 당해 지역의 주택 및 토지의 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보다 높은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 가능(동시행령 제162조의3제 1항제4호 신설)

〈건의내용〉

투기지역 지정요건 완화 조항 신설 삭제



주택정책·제도 실무위원회 회의

〈제1차·제2차〉

- 일 시 : '04. 7. 16(금) 16:00 / '04. 7. 27(화) 16:00
- 장 소 : 협회 회의실(회의주재 김의열 제도1팀장)
- 참석자 : 실무위원 및 견적업무 담당자(13명)
- 안 건
 - 서울시 동시분양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 대응방안
 - 분양원가 공개 방안에 대한 업계 대응방안
- 회의결과
 - 연구 용역 및 행정 소송제도 추진 등 적극적 대응 검토
 - 원가공개 관련 시민단체의 불합리한 주장에 대해 선별적 대응



주택건설기준 개선을 위한 연구 관련 자문회의

- 일 시 : 2004. 7. 23(금) 15:00~17:00
- 장 소 : 대한주택공사 종합상황실(3층)
- 참석자
 - 건교부 : 주거환경과장, 담당사무관
 - 자문위원 : 서울시립대 최찬환 교수 등 16인
 - 우리협회 : 이철용 제도2팀장
 - 연구진 : 최일홍 주택공사 수석연구원 등 17인
- 회의내용
 - 현행 주택건설기준의 문제점, 법적 위상 및 구성체계 재정립
 - 주택건설기준의 핵심목표, 주요 이슈설정
 - 주요임대주택기준의 방향설정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제2차 회의

- 일 시 : 2004. 7. 27(화) 14:00
- 장 소 : 건교부 대회의실
- 참석자 : 협의회 위원(협회 김의열 제도1팀장 참석)
- 회의결과
 - 무직 이륜차에 대한 법령 개정 제안
⇒건교부·검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 추진(장기과제)
 - 시내버스에 좌식안전벨트 의무화
⇒민원인 주장대로 모든 자동화에 좌식안전벨트 의무화 추진
 - 조합원 명의변경시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첨부 의무화
⇒조합원 명의 변경시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하도록 조합규약 개정
 - 콜밴차량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현행유지
 - 밴형화물차 외국어 번역기 설치 의무화⇒현행유지



노인주택 정책방향설정 회의

- 일 시 : 2004. 7. 28(수) 14:00
- 장 소 : 건설교통부 국제회의실
- 참 석 자 : 주거복지과장외 8명(협회 남희용 정책연구실장 참석)
- 회의내용 : 노인주택 정책방향 등



주택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모임

- 일 시 : 2004. 7. 30(금) 18:30
- 참 석 자 : 이방주 협회장, 김종철 부회장, 남희용 정책연구실장, 김정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손경환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실장
- 회의내용 : 제1회 부동산 국제세미나 개최 관련 논의

정부위탁업무

1.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처리

○ 소재지

변경 전	변경 후	처리일자	처리일자
우미건설(주)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40-2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944-2	7.30

○ 대표자

업체명	변경 전	변경 후	처리일자
진덕산업(주)	이상권	우오현	7.2
울트라건설(주)	허영기	박경자	7.15

2. 월별 주택분양계획 · 분양실적

구분	8월 분양계획	6월 분양실적	
		당월	누계(1~6)
2004년	34,129	33,741	88,140
2003년	22,251	15,727	66,398
증감	11,878 (53.4%)	18,014 (114.5%)	21,742 (32.7%)

※ 입주자모집공고(예정)일 기준

3. 주택건설실적확인서 발급

2004. 7. 31 누계

구분	건수	부수
계	172	419
신용평가	55	115
입찰참여	59	127
분양보증	44	146
기타	14	31